

2012년 6월 제29호  
ISSN 1976-6041(On-Line)

#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한광일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 권두언

평범함이 위대함으로 빛나려면 ..... 김재민 경일대학교 교수

## 연구특집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실태와 대책 ..... 치안정책연구소 유지웅 연구관  
경찰 웹사이트 평가방안 .....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연구관  
일본의 체류외국인 범죄실태와 대응책 .....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 연구관

## 치안정책동향

해외 경찰관련문헌 조사방법 -미국편- .....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연구관

## 입법·판례동향

2012. 5.~6. 국내외 입법 및 판례 소개

##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 권두언

## 평범함이 위대함으로 빛나려면

경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재민



**최** 근 필립 얀시(Philip Yancey)라는 분이 쓴 책에서 2차 세계대전 사상 가장 치열했던 연합군의 ‘불지 전투(battle of Buldge)’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던 노병(老兵)들에 대한 인터뷰 소감을 읽어보게 되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참호 속에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 독일군 탱크가 지나가면 중화기로 탱크를 파괴시켰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카드놀이로 두려운 시간을 이겨냈다고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포병으로서 맹렬한 포격전을 치렀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보병들에게는 그리 특별한 것도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1945년 1월, 결국 그 전투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들은 당시 그 전투가 그토록 중대한 것임을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 역사를 새롭게 했던 그 위대한 승리는 이처럼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군인들의 노고에 힘입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 역사를 통해서도 이름 없는 경찰관들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를 회고해 볼 수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전투를 치루면서, 또는 휴전 이후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던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에 맞서 싸우면서 많은 무명의 경찰관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을 때에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많은 시간을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격한 시위현장

을 누볐으며, 그 과정에서 병이 들거나 순직한 경찰관들도 많았다.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그 어려운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국민들의 땀과 눈물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사회 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분을 다하고자 자신들의 몸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평범한 경찰관들의 아픔과 희생도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에 기여한 값진 행동들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대 한국경찰이 범했던 여러 가지 과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이제 노동, 환경, 복지 분야와 관련된 민생관련 시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 및 각종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경찰조직은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골몰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집회시위 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애쓰는 한편, 강력범죄 척결을 위한 과학수사활동의 강화, 전화금융사기 단속 등 지능범죄에 대한 대응, 원스톱지원센터와 같은 범죄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전면허 시험제도 간소화 등과 같이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 그 부분에 치안서비스를 집중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시대를 달리하면서 기울여 왔던 경찰의 여러 노력들과, 대다수 경찰관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2011년 경찰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국무총리실 조사결과 20개 기관 중 18위로 나타났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국민의 경찰 서비스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은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째는 경찰에게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경찰관들이 민감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측면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경찰 시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민원인들의 심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탁월한 제도 및 시책들의 효과는 반감되고 만다. 민원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는 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경찰의 공식적인 업무처리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지만 경찰관과의 접촉과정에서 친절한 안내와 격려의 언행을 통해 크게 감동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찰관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고객으로 섬기는 실천적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식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뿌리 깊은 권위의식 때문이기도 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겸한 전문적 교육훈련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국민을 섬기는 경찰관들의 진면목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전달이 되려면 모든 경찰관들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1인 홍보대사가 되어 섬김의 정신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은 이미 주지하다시피 경찰의 법집행 권력은 군림을 위한 힘이 아니라 국민의 불편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는데 쓰여야 할 ‘서비스 권력’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상기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는 부패문제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라는 사회학자는 ‘모든 부패행동에서 행위자들은 특정상황하에서 자기행동을 의사교환 방식으로 조정하려 들지 않고 돈과 권력을 위해 상대방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경찰의 부패행동은 국민 혹은 조직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익(私益)’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직무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법집행 권력은 사익 추구를 위해 쓰이는 ‘도구적 권력’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위해 조직구성원과 협력하고, 국민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데 활용해야 할 ‘의사소통적 권력’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의 직무상의 권력이 공익증진을 위해 타인과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통로이자 수단으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들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의식하지도 못한 채 묵묵히 경찰관의 본분을 성심껏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평범해보이지만 너무나 값진 그분들의 공직의 일상이 장차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며 값진 열매를 맺으려면 경찰관 전 구성원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조금씩만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읽고,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는 행동을 의지적으로 실천한다면, 또한 주어진 권력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경찰관들에 의해 공직수행의 상식으로 깊이 뿌리내리게 된다면 조용하고 평범하기만 했던 일상들이 장차 위대함으로 빛나는 그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실태와 대책

유지웅 책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 들어가며

정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사이버공간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유해매체의 실태를 살피고,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모색한다.

###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실태

정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심의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현황을 보면, 2002년까지는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 단행본 등 인쇄물 형태가 주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이후에는 인터넷상의 디지털 유해매체에 대한 유해성 결정 고시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터넷 상의 청소년 유해매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청소년 유해매체의 증감 추이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건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2008년 5월 동 위원회 출범 이후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 심의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 동안 불법·유해정보 심의건수는 2009년

24,346건에서 2011년 57,944건으로 늘어났는데, 불법 유해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음란·선정성 유해정보와 사행심 조장 유해정보의 심의 건수 증가율이 높다. 동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크게 시정요구 결정과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으로 나뉘고, 시정요구 결정의 유형에는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기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접속차단 조치는 해외불법정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선정성 유해정보 심의에서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사례는 2009년에는 1,475건에서 2011년에는 3,998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경험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의 40% 가량이 성인용 간행물과 온라인 음란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뤄진 한국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교급별로 연령이 많아 질수록 높으며, 가족구성별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이 양부모 가정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소년 유해매체 유통실태

#### 1.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 단속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오늘날 청소년 유해매체의 대부분은 디지털 매체가 차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와 달리 디지털 매체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된다.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 활동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 의한 디지털 유해매체 모니터링은 인력의 부족으로 그 한계가 있다. 최근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 감시단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호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 경찰서 단위의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에서 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유해정보 심의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위법 행위자 형사처벌은 경찰의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능하다. 특별히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고 유해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단속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역할이 필요하다.

**2. 불법 IT 서비스 업체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불법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개설 영업을 하고 있는 IT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을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는 것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 사이트 개설을 지원하는 IT 업체에 대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 운영자 제재의 강화**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과 그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져 오고 있으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같은 포괄적인 제재로서는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해정보 유통자가 시정요구를 받더라도 동일한 불법 유해정보를 새로운 사이트 개설을 통해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지만, 운영자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유해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웹하드, P2P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경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하다.

**맺음말**

오늘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규제와 단속을 통한 효과는 한계가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청소년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개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활동과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 노력의 조화 속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http://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현숙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신동욱, 이춘삼, 정웅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 74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620-2804 (경비) 61-2804
- e-mail: [webmaster@psi.go.kr](mailto:webmaster@psi.go.kr)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 경찰 웹사이트 평가방안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 들어가며

현재 경찰은 많은 경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민원, 신고 등도 경찰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찰도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로 경찰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경찰 웹사이트를 잘 구축하고, 잘 운영하고, 더 좋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찰 웹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웹사이트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며,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 웹사이트 평가를 이용하는데, 기존의 웹사이트 평가모형은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범용성을 가진 평가모형이었다. 범용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경찰 웹사이트를 평가할 경우 제대로 된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실정과 최근 IT 동향 및 관련 법령·지침을 반영한 경찰에게 알맞은 경찰 웹사이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 경찰 웹사이트 평가항목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관련 법령·지침과 IT동향을 반영하여 경찰의 실정에 알맞은 경찰 웹사이트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 1. 콘텐츠 평가항목

콘텐츠 평가항목에는 콘텐츠의 최신성, 정확성, 다양성, 관련기관정보, 중요정보제공으로 구분하였다.

분류	평가기준
콘텐츠의 최신성	● 제공하는 콘텐츠는 최신정보인가?
콘텐츠의 정확성	● 제공하는 콘텐츠는 정확한 정보인가? ● URL 링크는 오류가 없는가?
콘텐츠의 다양성	●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가?
관련기관 정보	● 소속기관이나 관련기관의 이동은 편리하고 정확한가? ● 웹사이트와 관련 없는 배너가 있는가?
중요정보 제공	● 팝업존의 내용을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가? ● 중요한 정보를 외부팝업창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는가?

<표 1> 콘텐츠 평가항목

#### 2. 디자인 평가항목

디자인 평가항목에는 경찰CI규정 준수, 가독성, 일관성과 심미성으로 구분하였다.

분류	평가기준
경찰CI 규정준수	● 웹사이트에 있는 경찰CI는 규정을 준수하는가?
가독성	● 웹사이트의 메뉴나 링크, 글자 등을 잘 알아볼 수 있는가? ● 이미지 링크 영역은 충분히 넓은가? ● 동영상 재생영역은 충분히 큰가?
일관성과 심미성	●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디자인 콘셉트가 유지되고 있는가? ● 글자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곳이 있는가? ● 웹사이트에 어울리지 않는 컬러나 아이콘 사용하는가? ● 메인메뉴와 서브메뉴 구조와 디자인이 다르지 않는가? ● 웹사이트의 사진이나 일러스트 사용이 해당 웹페이지에 어울리는가? ●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사진은 가로세로 비율이 1:1인가? ● 색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웹사이트에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했는가? ● 각종 경고창 문구는 적절한가?

<표 2> 디자인 평가항목

### 3. 대국민 소통 평가항목

대국민 소통 평가항목은 기관장과의 소통, 민원서비스·게시판 운영, 행정정보제공, 조직정보제공, 여론수렴기능, 정책홍보로 구분하였다.

분류	평가기준
기관장과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민원의 건수와 그 처리결과, 처리소요시간, 처리결과 통보, 만족도 등을 소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취합, 관리하는가?</li> </ul>
민원서비스·게시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대변인실의 민원평가방법 사용</li> <li>●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li> <li>● 민원처리진행상황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는가?</li> </ul>
행정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게시하고 있는가?</li> <li>● 해당 기관의 자체 운영규칙 등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li> <li>● 최신 민원서식을 제공하고 있는가?</li> </ul>
조직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도와 함께 소속된 각 부서의 연락처와 담당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li> <li>● 해당 기관의 위치와 찾아오는 길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가?</li> </ul>
여론수렴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가?</li> <li>● 관리·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정책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현안이나 중요한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li> <li>● SNS를 정책홍보에 잘 활용하고 있는가?</li> </ul>

<표 3> 대국민 소통 평가항목

### 4. 기술 평가항목

기술 평가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웹접근성, 웹표준, 접근속도, 모바일서비스, 웹사이트 관리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분류	평가기준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 방법을 사용</li> </ul>
웹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적용</li> <li>● 웹접근성연구소(wah.or.kr)에서 제공하는 K-WAH 3.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평가</li> <li>●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li> </ul>

분류	평가기준
웹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li> <li>●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li> </ul>
접근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ebwait.com, slowcop.com loads.in 등과 같은 웹사이트 로딩속도 측정 이용</li> <li>● 웹사이트 메인화면에 용량이 큰 사진이나 동영상, 플래시 파일은 없는가?</li> <li>● 웹사이트 메인화면의 게시판 수는 적절한가?</li> </ul>
모바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태블릿PC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QR 코드 등)와 화면구성을 제공하는가?</li> </ul>
웹사이트 관리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경찰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발견한 오류/개선사항을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li> </ul>

<표 4> 기술평가항목

### 5. 사용자 편의성 평가항목

사용자 편의성 평가항목은 이용편의서비스 제공, SNS 연동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검색기능, FAQ유용성, 웹사이트 이용방법제공, 개인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였다. [PSI](#)

분류	평가기준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한글, PDF 파일 등을 볼 수 있는 뷰어(Viewer)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가?</li> <li>● 저시력자를 위해 웹사이트 화면을 확대/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li> <li>● 아이디/비밀번호를 찾는 기능은 편리한가?</li> </ul>
SNS 연동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웹페이지)를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과 같은 SNS로 퍼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가?</li> </ul>
웹사이트 검색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검색과 상세검색기능을 제공하는가?</li> <li>● 검색결과를 여러 페이지로 나눠서 보여주는 경우 - 현재 페이지를 구분하기 쉽게 보여주는가? - 원하는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가?</li> </ul>
FAQ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나 문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노출하고 있는가?</li> <li>● 다양한 매체로 이용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와주는가?</li> </ul>
웹사이트 이용방법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메뉴에 대한 이용방법이 웹사이트 메인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가?</li> </ul>
개인맞춤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li> <li>● 사용자의 관심정보를 사용자의 계정에 스크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li> </ul>

<표 5> 사용자 편의성 평가항목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 일본의 체류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책

김윤영 책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 문제 제기

일본은 1990년대 체류외국인의 범법행위가 급증하자, 외국인 범죄조장 요인과 범죄조직 등의 실태를 파악한 후, 외국인범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불법체류자 인프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 범죄의 인프라인 지하은행, 위장결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위조, 불법취업조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자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최근 3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체류카드를 교부하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2012.7)를 도입하여 불법체류자 등의 범법자를 보다 쉽게 색출하도록 하는 등 체류외국인을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일본당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정책은 외국인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외국인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은 과거에 비해 일본 내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입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외국인 범죄 현황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보다 앞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일본이 외국인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다양한 외국인 범죄 대책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일본의 외국인범죄 검거추이

2011년 일본 내 체류외국인은 2,078,480명으로, 일본 인구(약 1억2,700만명) 대비 1.6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일본 체류외국인 범죄는 경찰과 출입국 관리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각종 대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10년 전인 2001년 1월 220,552명에서 2012년 1월 67,065명으로 감소했다. 2011년 현재 외국인 범죄(형법범 및 특별법범)의 검거건수 및 인원은 17,272건에 10,048명으로 전년 대비 건수 12.8%(2,537건), 인원 15.3%(1,810명) 모두 감소하였다.

〈표〉 일본의 체류외국인 범죄검거 현황

연도	검거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10년 대비 '11년	
		인원수	증가율	인원수	증가율	인원수	증가율	인원수
총검거	건수	35,782	31,252	27,836	19,809	17,272	-2,537	-12.8%
	인원	15,914	13,885	13,257	11,858	10,048	-1,810	-15.3%
형법범	건수	25,730	23,202	20,561	14,025	12,582	-1,443	-10.3%
	인원	7,528	7,148	7,190	6,710	5,889	-821	-12.2%
특별법범	건수	10,052	8,050	7,275	5,784	4,690	-1,094	-18.9%
	인원	8,366	6,737	6,067	5,148	4,159	-989	-19.2%

\* 출처: 來日外國人犯罪の檢舉狀況(平成23年確定値)

2011년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범죄(형법범 및 특별법범)검거는 중국(대만, 홍콩인 제외)이 건수 45.4%(7,839건), 인원 39.9%(4,01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검거건수는 베트남 10.1%(1,749건), 검거인원은 한국 10.7%(1,071명)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국적 범죄자가 50.9%를 차지한 것은 한·일·중 3국의 밀접한 지리적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최종별 검거건수를 보면 형법범 검거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10.3%(12,582건), 인원 12.2%(5,889명) 모두 감소했다. 즉, 검거 건수를 보면 흉악범(17.9%), 절도범(2.0%), 절도범(12.1%), 풍속범(8.3%), 기타(8.7%) 모두 감소했다. 다만, 지능범의 검거건수만 3.2%(24건) 증가했으나, 검거인원은 17.2%(90명) 감소했다. 특별법범의 경우 전년 대비 검거건수 18.9%, 검거인원 19.2% 각각 감소했는데, 검거 건수로는 입관범(23.2%), 풍속범(20.2%), 매방법(45.1%), 약물사범(5.4%), 기타(10.2%) 모두 감소했다. 검거 인원 또한 입관범(23.6%), 풍속범(18.6%), 매방법

(7.6%), 기타(10.6%) 전원 감소했다. 특히, 2011년 전체 특별범법 검거 중 입관범 위반 검거 건수는 60.1%(2,819건), 검거인원 58.5%(2,4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방법 위반은 2010년 대비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다. 총도법 위반 검거의 경우 건수는 2010년 대비 17.5%(14명), 인원은 11.8%(8명)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외국인범죄 대책

#### 범죄 예방 활동

첫째, 일본은 외국인 입국 통제를 강화하고자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여 왔다. 2005년 사전여객정보시스템(APIS)을 도입하여 외국인 탑승자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2006년 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장(長)에게 탑승자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2007년 동법을 재개정하여 외국인 입국시 지문날인과 얼굴촬영 등 개인식별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외도 불법취업조장죄(1989) 및 불법체류죄(1999)를 신설했다. 2004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불법입국죄 등에 관한 벌금액의 상한액을 인상했다.

둘째,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문화와 일본문화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방문 교실 개최 및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안내서 및 외국어 방법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경찰은 법무성, 노동성, 지방공동단체 등과 연계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대책 등 관계국장 연합회의’(1999.3) 개최, ‘일본 방문 외국인 범죄 대책 및 불법체재·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활동 강화 월간’(1999.6) 실시, ‘국제화 대책 위원회’(1999.5) 설치, 불법체류 중개와 방조 단속을 위한 조사·협력 프로젝트 조정회의 실시(2002.2),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합동 불법체류자 적발(2006), ‘신 체류관리제도’(2012.7) 도입 등 관계 기관·단체와의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경찰은 외국인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범죄자 국적국의 치안기관과 정보교환 및 수사 협력, 양국간의 협의, 조약체결 교섭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 외국인을 위한 치안서비스 개발 지원

일본 경찰은 외국인 범행자 적발보다 범죄예방에 우선적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각종 치안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외국인이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정보교환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빈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체류외국인 전용 방문 교실 개최, 외국어 홍보물 작성 배포를 통한 생활 안전에 관한 조언, 외국인 상담을 통한 각종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류외국인 연수생 근무지 기업들이 결성한 연락협의회와 제휴를 통해 외국인 종업원과 연수생들이 사건·사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각종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맺는 말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불법체류자 등 다양한 외국인 범죄 감소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대책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흉포화·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 경찰 역시 외국인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류외국인도 우리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들의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의 사회문화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인 안목 하에서 치안대책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PSI](#)

## ■ 연구논문

## 해외 경찰관련문헌 조사방법 - 미국편 -

김 현 숙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 연재를 시작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저 파일 하나, 책 한 줄에 불과하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잘 수집하여 분류하고 이용한다면 보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경찰의 수사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집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수사관의 수사활동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글을 쓰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많은 1차 자료와 이를 연구한 2차 자료(연구문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글을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직 후에 미군정청에 경무국을 둬으로써 본격적으로 현재의 경찰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 이전의 조선시대에는 포도청(포청)을 경찰서, 포졸을 경찰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을 현재의 경찰과 온전히 대비시키기에는 그 적용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현대 한국경찰의 역사는 길어야 70년이 채 안된다. 게다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와 단절된 상태에서 근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우리 현행제도의 뿌리가 우리의 역사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연혁적인 고찰이 필요할 때에는

외국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경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찰에 대한 역사도 깊고 연구성과물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이러한 외국의 연구성과는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선행연구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외국에서 사회나 제도가 발전하면서 겪었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겪지 못한 문제들을 미리 추정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점도 외국연구의 큰 성과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미래의 경찰운동과 치안수요 예측에도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는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경찰분야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의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래는 하나의 완성된 글로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면관계상 각 국가별로 나누어 연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해외정보인 미국, 일본, 영국, 유럽국가, 중국 순으로 외국의 경찰(학) 관련 DB 구축현황 및 문헌조사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되어 있는 기초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발굴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해외 데이터 조사방법 - 미국 -

미국의 문헌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법체계의 기본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50개 주와 특별구, 준주(territory)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각자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의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보통법계국가이지만,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법률과 판례 모두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각각 범죄통계나 범죄분석을 담은 출판물도 따로 발행하고 각주의 데이터를 통합한 것이 바로 연방의 데이터라고 보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으므로, 데이터를 선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 방대하여 모두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일은 어려우므로 이 글에서는 연방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찰관련 데이터베이스는 1) 정부기관의 데이터(연방, 주), 2) 비정부기관의 데이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정부기관의 데이터



미연방경찰인 FBI(<http://www.fbi.gov>)는 매년 통합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29년에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1930년 이래 매년 발간되어 오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상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방범죄 통계보고서로서 가장 데이터가 충실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범집행기관으로서 좀 더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NIBRS(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을 구축하여 상세한 범죄정보 및 정부 계획, 연구결과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보국 CIA(<https://www.cia.gov>)는 주로 세계각국의 주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현재 267개 국가의 역사, 인구, 경제, 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백서의 형태(The World Facebook)로 발간하고 있는 CIA의 대표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매년 다양한 보고서들이 작성되고 있는데, 주로 미국 외의 테러, 이라크문제 등 중동지역 관련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상 많은 범죄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곳은 미법무성(justice.gov)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교정국, 검찰국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기는 하나, 체포 등 경찰수사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상당수가 게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간행물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원문 전체가 html파일이나 pdf파일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 미국의 연방정보 사이트로는 1) 의회도서관(www.loc.gov), 2) 미의회(www.house.gov), 3) 미연방대법원(supremecourt.gov), 4) 국가기록원(www.archives.gov), 5) 연방사법부(www.uscourts.gov) 등과 주법원의 연합체로 NCSC(www.ncsc.dni.u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 법률 및 판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공식 판례집인 United States Reports는 1790년에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매우 방대한 분량의 판례집이다. 그러나 선고된 판결이 판례집으로 출판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선고후 약 4년) 최근에 선고된 판결은 해당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 비정부기관의 데이터

비정부기관의 데이터는 1) 단순 가공된 데이터와 2) 학술연구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순가공데이터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하나 입력한 날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료입력을 통하여 얻어진 경향, 통계 등의 자료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NCJRS(National Criminal Justice Reference Service Abstracts Database; http://search.proquest.com/ncjrs)를 들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Rutgers 대학과 협력하여 CSA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범죄경향, 방지와 제지, 미성년 비행, 판사, 경찰, 처벌, 판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로 자료의

목차와 요약본을 수록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다양하다. 모두 유료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장 최근까지의 문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원문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Hein-online(heinonline.org, 주로 법학분야), Academic Search Complete(search.ebscohost.com), JSTOR(www.jstor.org, 주제 전분야의 핵심 학술지에 대한 원문을 제공하고 있음)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해당 학술지의 원문을 모두 담고 있으나, 2-3년 전의 데이터까지만 수록하고 있으므로, 최신호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 및 판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Westlaw(www.westlaw.com)와 Lexis-nexis(www.lexisnexis.com)가 있다. 이 두 데이터는 위와는 반대로 최신 정보를 즉각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분류가 아닌 검색 방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어를 잘못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다음 호에서 계속) [PSI](#)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 지난 28호에 의견을 주신 대구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윤재상님께 감사드립니다.

■ 국내외 입법 및 판례 동향

2012. 5.~6.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형사소송규칙’

- 2012. 5. 2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403호
- 시행: 2012. 5. 29.
- 주요내용

· 조서에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을 인용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 공판조서 낭독청구에 대하여 낭독 대신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는 호칭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예시로 피해자의 변호사를 추가함(제84조의3).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 2012. 6.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3831호
- 시행: 2012. 6. 5.
- 주요내용

· 단순·경미한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검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직무범위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추가함.

국내 주요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 판결요지[다수의견]

·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를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개정하였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401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주거침입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되어 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부산고등법원 2010노515),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와 강간치상죄의 결합범의 법정형을 같게 한 것은 주거침입과 강간치상이라는 공통요소에 착안하여 법정형을 같게 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특수강간치상죄와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치상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나, 주거침입강간치상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가정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의 크기가 동일하거나 더 무겁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과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보다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의 불법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더 큰 경우도 있고, 법관의 양형을 통하여 형량의 불합리성은 해결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마288 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하는 A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에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에 부수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속칭 자동차냥 프로그램과 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직업의 자

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과 형벌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제공 또는 승인 여부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처벌보다 경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등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290916 판결 [위자료]

- 사건의 개요

- 원고 등은 2008. 8.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 원고 등은 경찰서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해당 경찰서 소속 여자 경찰관으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아 교부하였다.
- 원고 등은 이 사건의 조치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 판결요지

- 유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를 사용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유치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이들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는 등 이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 이 사건 조치는 원고들의 자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원고들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살징후 포착여부나 원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

외국 주요 입법

● ‘장애자 학대 방지, 장애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障害者虐待の防止、障害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 2011. 6. 24. 법률 제79호 제정, 2012. 4. 6. 법률 제27호 일부개정
- 시행: 2012. 10. 1.
- 주요내용
- 본 법률은 장애인 학대금지, 학대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다른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학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애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 위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위치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하려고 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외국 주요 판례

● Williams v. Illinois(미국연방대법원, 2012. 6. 18.)

- 사건개요

- 청구인인 Williams는 22세 여성을 강간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발견한 DNA샘플을 매릴랜드주 셸마크 연구소에 분석의뢰하였다. 재판절차에서 일리노이주 경찰 소속 수사전문가인 Sandra Lambatos는 셸마크 연구소에 유전자분석을 의뢰한 과정과 그 결과를 진술하였고, 피고인이었던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대면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항소하였다.
- 일리노이주 항소법원과 주대법원은 셸마크의 보고서가 본 사건의 유무죄판결에 증거로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대면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

- 연방대법원은 Crawford v. Washington 사건의 판결을 예로 들어 헌법상 대면권 조항은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법정 이외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전문가 증언은 사건에 대한 1차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의견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 대면권 조항을 적용하여 증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셸마크의 보고서 또는 기록이 전문증거나 유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 셸마크의 보고서는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입증하는 용도로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이를 바탕으로 수사분석전문가가 법정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정리: 김현숙 연구관) [PSI](#)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소장 한광일 경무관)는 2012년 5월 4일 학술교류협정 기관인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신사회관리시대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법학관련 교수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과의 학술교류협정체결**

치안정책연구소는 2012년 6월 29일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박민영 동국대학교교수)에서 동 연구원과 상호연구활동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 추진, 발간물교환 및 기타 연구발전에 관한 토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은 199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세계 각국 법제 및 법문화를 비교 연구하고, 특히 불교관련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관 동정**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2012년 5월 4일의 위 국제공동세미나에서 ‘신사회관리시대의 SNS 이용 활성화에 따른 과제와 치안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5월 23일에는 충남지방경찰청 정보통신요원 워크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다.

◆ **김남선 책임연구관(교통대책연구실)**은 6월 14일 경찰대학 행정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ITS 개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찰교통론’을 경찰대학 교수진과 함께 저술하였는데, 저서는 6월 7일 경찰공제회에서 출간되었다.

◆ **김현숙 선임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6월 26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가워크숍에서 ‘일본법에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백병성 선임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6월 26일 한국소비자원 ‘우체국서비스의 소비자피해구제방안’ 연구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하였고, 6월 28일 ‘2012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경찰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 **유동열 선임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공군교육사령부(5.30), 육군포병학교(6.7), 국군정보사령부(6.21)에서 군장병을 대상으로 ‘중북세력의 실체와 대책’에 대해 안보강연을 하였다.

또한 5월 10일 세종연구소 안보세미나에서 ‘북한의 권력재편과 대남전략 변화가능성’을, 5월 23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에서 ‘중북세력의 뿌리와 가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6월 15일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세미나에서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와 방첩역량의 강화모색’에 대해 토론하였다. 6월 21일자 문화일보에 ‘안보사건 판결과 법정모독’이란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 **이기수 경찰연구원(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4월 27일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춘계공동학술회의에서 ‘허위자백 사례분석을 통해 본 형사절차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6월 30일 중국 산둥대학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중일 법사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 **이상수 선임연구원(정책기획연구실)**은 6월 28일~29일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경찰 수사과정의 운영실태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충북자치연수원에서 “공정사회 주요과제 및 실천방안”(6.5.)을,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6.13.)를 주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치안정책 연구 발간 및 배포**

치안정책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지인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1호의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20편의 논문을 접수하였다.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10편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술지는 7월 중 전국 경찰관서 및 경찰관련 학과 개설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며, 연구논문은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연번	주 제	성명
1	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이성룡
2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향: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윤경희 박동균
3	산업기술 유출경로 연구	최응렬 송봉규 이영일 박경민
4	현행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오삼광
5	경찰수사상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유주성
6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검토	김현숙
7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상훈
8	주중 재외국민의 범죄피해 인식조사	박성수
9	경찰공무원의 ‘안전’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연구	강희창 이대희
10	성매매 청소년 사법처리와 지원시설 연계의 과제	유지웅

**용역(지정·자유)연구과제 선정**

◆ **용역(자유) 연구과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1	교통경찰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철기 (아주대)
2	스토킹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 경찰작용에 관한 연구	이성용 (계명대)
3	경찰내사의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세종 (조선대)
4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방안	김재광 (신문대)
5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법경찰관제도 정비방안	김택수 (계명대)

◆ **용역(지정) 연구과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위원
1	치안성과평가의 성과분석·진단매뉴얼 개발에 관한 연구	강영철 (경찰대)
2	경찰 핵심과제 도출 및 교육제도와 연계를 통한 실천방안 연구	장석현 (순천향대)
3	신입순경 의식변화 원인 조사	박재풍 (극동대)
4	과학기술중심 치안환경에 따른 경찰정보화 업무 조직설계	이상열 (한국복지사 이버대)
5	집회시위현장 경찰 법집행에 대한 국민수용도 제고방안	김순석 (신라대)
6	통일대비 북한지역 치안체제 구축방안	정지웅 등 (통일미래사 회연구소)
7	소년범 처리시 즉결심판 청구활성화 방안	이기호 등 (경찰대)
8	민수용 화약류범죄(테러)대응 안전관리 강화방안	김정규 (남부대)
9	전국 무인단속장비 적정 운영수량 산정	홍창의 (관동대)
10	선진국의 사이버범죄 정보분석제도 도입방안 연구	이웅혁 (경찰대)
11	기업·경찰간 해킹·디도스범죄 표준대응 모델연구	최정호 (한국해양대)
1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	송광섭 (원광대)
13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김태명 (전북대)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li> <li>•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li> <li>•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li> <li>•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li> </ul>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li> <li>•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li> </ul>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li> <li>•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li> <li>•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li> <li>•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li> </ul>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li> <li>•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li> </ul>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li> <li>•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li> </ul>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li> <li>•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li> </ul>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li> <li>•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li> <li>•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li> </ul>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li> <li>•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li>•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li> <li>•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li> </ul>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